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698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무 명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필 요 성

-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하여 출연 필요

4) 사무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

5) 소요예산 : 33,000,000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서울디자인재단 기관 개요

- 1)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 2) 규 모 : 대지 3,191 m^2 , 건물 5,937 m^2 (9층 건물)
-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편성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서점덕(☎ 2133-2703)